

제 104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5월 4일 하오 3시 40분
2. 폐 의: 단기 4293년 5월 4일 하오 6시 2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삼성, 부의장 명남철 및 임시의장 김상대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박두순,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종국 외 각 과장 및 시정주무
교육감 박세문 외 서무, 학무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103회 회의록 통과
 - (2) 청원서 접수상황 보고
 - ①산정농민 친목회 제출
 - ②목포시 분뇨청소사업 대행인 강두선 제출
 - ◆부의사항
 - (1) 목포시 시세 조례 중 일부 개정안
 - (2) 단기 4293년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3) 목포시 공익 전당포 운영 자금일시 차입 승인 안
 - (4) 단기 4293년 제 1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5) 단기 4293년 제 1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6) 단기 4293년 제 1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7) 단기 4293년 제 1회 목포시 소방 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8) 국민학교 부지소유권 이전 안

(9) 목포 달성 국민학교 부지 구입 안

(10) 단기 4293년 제 1회 교육 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8. 토의사항

※제 103회 회의록 통과

◇서기 주 도 식

-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청원서 접수상황보고

(1) 산정 농민 친목회 제출분

(2) 목포시 분노 청소사업 대행인 강두선 제출분

◇간사 김 귀 석

- 낭독

◇김 창 희 의원

- 법정시간이 되었음으로 차후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할 것을 긴급 동의 하
다.

-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남 진 의원

- 소개 발언하다 (산정농민회 청원분)

◇김 상 태 의원

- 소개 발언하다 (목포시 분노 청소사업 대리인 청원분)

◇김 삼 성 의장

- 양건 해당상 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박 종 국 부시장

- 박 시장 사표문제에 있어 좌담회 논의로 관사를 방문하며 현하 정국의 정세를 설명하고 사직함이 좋다고 부인에게 전달하였다. 만일 사임 않으면 불신임운운 (장내소란으로 중단됨)

◇김 삼 성 의장 보충

- 3.15선거 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낌과 아울러 행정부 감독 불충분 등으로 어제부로 의장직의 사표를 제출하였다. 금일 좌담회 후 대표단이 시장을 방문하여 현하 정세에 따라 도의적으로 사임함이 옳다고 설명하였으니 사임할 것을 확약하였다.

◇김 상 태 의원

- 본 의원 역시 산업분위장직을 구두로 사표를 제출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사표수리를 동의한다.

◇김 삼 성 의장

- 동의를 있음으로 퇴장한다. (하오 4시 20분)
- 명남철 부의장과 사회 교체하다.

◇정 응 표 의원

- 김의장 사표수리에 반대는 않으나 안전이 상당하니 대내적인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부의안건 처결 논의부터 먼저 하도록 김상태 의원 동의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

◇천 철 수 의원

- 김상태 의원 동의 찬성하면서 부의장 및 내무 문사 징계 각 위원장도 동시에 사표를 수리 할 것을 동의한다.

◇김 경 인 의원

- 정 의원이 의장직 사표 수리 보유 요청이 있으나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

명남철 부의장 하단으로 최고년 장자 김상대 의원과 사회를 교체하다.

(하오 4시 30분)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의장 선거를 선언하고 투표로 들어가다.

- 투표현황 김상대 의원 - 8표, 김경인 의원 -2표

김삼성 의원 - 1표, 기권 -3표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의장으로 김상대 의원 당선을 선언하다.

- 김상대 의원 동의 김 의장직 사표 수리를 표결에 부쳐 재적 14명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의장직 사퇴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고 나온 것으로 본다. 시민의 여론에 따라 공백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니 부의장과 각 상위원장 사표수락을 보류할 것을 개 의한다.

◇김 창 희 의원

- 천의원 동의(부의장, 내무, 문사, 징계위장 동시 사표수리)에 찬성한다.(개 의와 동의 표결) 김경인 의원 개의를 표결한바 재적 14명중 찬성 4표로 부결 되고, 천철수 의원 동의 표결 결과 재적 14명중 찬성 8표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부의 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총무과장 김 귀 석

- 부의 안건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시정주무 박 상 규

- 부의 안건 제 4항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김 창 희 의원

- 부의 안건 제 1항부터 제 10항까지 일괄하여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를 동의하다.

◇김 일 섭 의원

- 한 건 한 건 씩 처리할 것을 개의하다.

◇김 경 인 의원

- 김창희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하다.

◇김 성 균 의원

- 김일섭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하다.

◇이 정 권 의원

- 김일섭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하다.

◇ 김 상 대 임시의장

- 김일섭 의원 개의에의 한 건 한 건 제안 이유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 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시정주무 김 상 규

- 부의 안건 제 5항부터 제 7항까지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총무과장 김 귀 석

- 부의 안건 제 8항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교육청 서무과장 이 현 두

- 부의 안건 제 9장, 10항 제안 이유 설명하다.

◇이 정 권 의원

- 대 집행부 질의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1) 시 일반회계 추경 예산 중 축산비 보조액보다 세출액이 많은 이유
- (2) 대성2구 동 판도 보수 공사비의 세입세출이 상이한 이유

◇김 성 균 의원 질의

- (1)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에 있어 조흥은행에 철충여부 및 결과
- (2) 동특 예산중 세입의 전년도 이월금이 거액인 이유

◇김 일 섭 의원

- 소방 특별회계 예산의 세출중 시설비의 저수당구개(덜개) 3개 신조장소

◇김 상 대 임시 의장

- 집행부에 답변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하오 6시 10분까지 휴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5시 5분)

◇김 상 대 임시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6시 10분)

◇시정계상 박 상 규 답변

- 이정권 의원 질의에 대하여

(1) 축산비 관계는 세출 보조비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2) 대성2구 동 판도 보수 공사비는 세출의 액수가 「미스」임으로 세입의 액수로 정정하기 바란다.

- 김일섭 의원 질의에 대하여

저수당구개 3개의 신조장소는 불종대 상락동 및 경동의 3개소이다.

◇박 사회과장 답변

- 김성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공익 전당포 운영자금 기채건에 있어 조흥은행에 교섭은 형편에 의하여 보류하였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동정 예산 중 세입의 전년도 이월금 6,648,800환의 증액은 법인 세무과 신설에 따른 자연 증액된 분이다.

◇김 일 섭 의원 질의

- 교육 위원회 추경 예산 세입에 있어 세입 목적(표)를 달성치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남 진 의원 질의

- 교육 공무원의 체납 (체불)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김일섭 의원 및 김남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세입 목적(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나 만일 세입을 확보치 못하면 집행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 공무원의 체납(체불)보수는 세입이 확보 되는대로 지불하고자 한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부의 안건 제 1항부터 제 10항까지 해당상의 위원회로 회부 할 것을 선언하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산회를 선언하다.

(하오 6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 함.

단기 4293년 5월 7일

시의원 조양순

시의원 천철수

작성자 서기 배문봉

제 104회 제 2차 목포 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5월 6일 상오 11시

2. 폐 의: 단기 4293년 5월 6일 하오4시 2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김상대 의원 및 임시의장 명남철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박두순,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종국 외 각 과장 및 시정주무

교육청 서무과장 이현두

7. 의사일정

◆보고사항

내무분과 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 보고

◆부의사항

제 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 의장 선거를 선언하다.

- 임시 의장 선거 투표 결과

조양순 의원 - 7표, 김삼성 의원 - 1표,

김경인 의원 - 1표, 김상대 의원 - 1표, 기권 2표

◇조 양 순 의원

- 본인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치통관계로 사회할 수 없으니 사퇴하고자 한다.

◇사회 김 상 대 의원

- 조양순 임시 의장이 사퇴함으로 인하여 재차 임시 의장을 선거할 것을 선언하다.

- 임시 의장 재선거 투표 결과

김삼성 의원 - 1표, 임석희 의원 - 3표, 명남철 의원 - 2표

김남진 의원 - 1표, 김경인 의원 - 2표, 기권 3표

◇임 석 희 의원

- 형편에 의하여 사회를 담당할 수 없으니 사퇴하고자 한다.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석희 의원이 임시 의장 당선을 사퇴함으로 인하여 3차 임시 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다.

- 임시 의장 선거 3차 투표 결과

김남진 의원 - 4표, 김경인 의원 - 1표

명남철 의원 - 4표, 기권 3표

◇김 남 진 의원

- 명남철 의원과 본인이 동표로 임시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나 명남철 의원에게 양보하고자 한다.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 의장으로 명남철 의원과 김남진이 당선되었으나 김남진 의원이 양보함으로 인하여 명남철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 명남철 임시 의장과 사회를 교체하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개회를 선언하다.

◇이 정 권 의원

- 작일 내무위원회에서 부의 안건 종합심의를 함에 있어 형편에 의하여 완전심의치 못하였으므로 본회의에 앞서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함. 재청과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김상대 의원 퇴장

(상오 11시 20분)

◇명 남 철 임시 의장

-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오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하다.

(상오 11시 30분)

◇명 남 철 임시 의장

- 속개 선언하다.

(하오 2시 30분)

◇김 일 섭 임시 내무위원장

- 내무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 보고하다.

(1) 산정동 농민 친목회에서 제출된 청원이 있어서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의거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매각토록 하다.

(2) 목포시 분노 청소사업 대행인 강두선으로 부터 제출된 청원에 있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동월 20일까지 20일간 미작업일수분 120,000환과 다이야 교체에 따른 소요액 중 그 반액인 280,000환 합계 400,000환을 제 2기 불입금 중에서 감액조치 하여 주도록 하였음.

(3) 부의안건 제 1항부터 제 7항까지는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았다.

(4) 부의안건 제 8항부터 제 10항까지 교육위원회 관계분에 있어서는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교육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의키로 보류하였다는 결의에 의하여 내무위에서도 일응 보류키로 합의되었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부의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김 창 희 의원

- 부의안건 제 1항부터 제 7항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심 숙고하여 심의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무수정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동의에 4청하면서 금반 상정을 본 각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나 특히 동특의 법인세 개정이 작년 11월에 부과 된 것을 지금에야 잉여금 6,600,000여 만환을 계상하여 행정전화 가설비의 거액의 세출 등은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 정기회의 동정세 세율인상에 있어 논의가 심하였다. 고의적으로 선거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15선거는 목포만 한 것이 아니니 재론은 불요하나 거액을 행정전화 가설비에 유용하였다. 시민에게 손실만 없다면 고집하려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4.19사태의 「피」가 헛되지 않고 보답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부탁한다.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부의안건 제 1항부터 제 7항까지 통과를 선언하다.

◇김 일 섭 의원

- 항동시장의 상인들이 자금난으로 마비상태이나 보증금 7,110,000환을 상인에게 즉시 반환 배부할 것을 긴급 동의 한다.

◇이 정 권 의원

- 김일섭 의원의 동dml에 찬성하면서 본회의의 결의로써 요청하도록 첨가한다. 삼청이 있었다. 동의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부의안건 제 8항부터 제 10항까지 상정을 선언하다.

◇이 정 권 의원

- 부지 이전안에 있어서는 왜정시 학교 비부지인 것을 교육청에서 사무적인 태만으로 지금까지 방치하였다. 교육청에 경고하는 뜻에서라도 또는 문사위의 요청도 있으니 금일 교육위원회에서 출석치 않았으므로 차기의회까지 제 8항부터 제 10항까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한다.

◇김 창 희 의원

- 전문위원에서 보류하도록 한 것이나 교육위의 제 부의안이 차기까지 보류하여두면 국민 교육면에 영향이 있으니 교육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제 8항부터 제 10항까지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통과 할 것을 개의한다.

◇김 경 인 의원

- 상세히 들었다. 국민교부지 소유권 이전 태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면 재촉 할 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일이 늦었다고 해서 거부나 보류는 곤란 하니 금일 결정을 지우지(고) 문사위에서 보류요청이 있다고 하나 거기에 이의 있으니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정 응 표 의원

- 이정권 의원의 심정은 잘 아나 교육청 관계에 있어 본인의 심정도 설명하고자 한다. 7년 전 건설과장 오씨가 목상교 옆에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지를 사유지 교환 조건으로 매입하여 현재 그분이 경작은 하고 있으나 등기이전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하 시장 재직시 의회의 결의를 거쳐 시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금일에 이르기까지 교육위의 태만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채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내 5월 18일까지 조치할 것을 전제로 해서 부의안건과는 별개로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김 성 균 의원

- 금반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의 과년도 수입 1,371,800환의 확보에 자신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가증(가공)수자를 계상하였기에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사위에서 3대2로 보류하였다. 내무위나 문사위를 제쳐 놓고 의결하도록 개의에 재청한다.

◇김 상 태 의원

- 김창희 의원 개의를 찬성하면서 삼청한다.

◇김 경 인 의원

- 김창희 의원 개의를 찬성하면서 사청한다.

◇이 정 권 의원

- 보류동의를 한사람이다. 가급적이면 함구하고자하나, 현 년도 수입을 가지고 과년도 부채를 정리하는 등 예산에 의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 반려동의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하였다.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심중(신중)을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이정권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였다. 가공적 수자의 계상이라는 것은 자타가 시인하는 사실이니 재원은 금년도 지출을 절약해 가면서 과년도 부채를 상환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대 교육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과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질의

- 교육청 자체에서도 만부득 하였다. 김경인 의원 말대로 절약해 가면서 과년도 부채를 정리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나 과거 예산목적에 위반한 일이다.

- (1) 금반 추경의 집행이 가능한가.
- (2) 부채의 정리의 순차는 여하

◇이 정 권 의원

-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 년도의 징수는 2할도 미급이고 작년도에도 5.6할밖에 징수치 못하였다. 미징액이 3억이 넘는데 현 년도 수입을 절약해서 과년도 부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보건수당도 작년도에 재정

부족 교부금으로 해서 보조가 영달되었고, 양곡대도 유용하였다. 보류동의는 철회하고자 한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영선비의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교육청 서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대단히 죄송하다. 추경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하며 부채의 정리에 있어서는 대외(부채)를 먼저 지불하고 대내는 나중에 지불하려고 한다. 보건수당에 있어서는 보조내시에 명시가 없어 착오를 일으켰으며 양곡대 유용한 사실이 없다. 영선비는 추경 예산과는 별도이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징수직원 월액여비 미불 이유여하

◇교육청 사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현재 징수가 여의치 않으니 미쳐 지불치 못하였다.

◇이 정 권 의원

- 징수성적이 불량한 이유는 징수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지불 않으니 그런 결과가 아니냐 성적이 불량한 직원은 교체하라.

◇김 상 태 의원

- 개의에 5청이다.

◇이 정 권 의원

- 개의에 6청이다.

◇명 남 철 의원

- 개의에 7청이다.
- 김창희 의원 개의를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부의안건 제 8항부터 제 10장까지 원안 무수정 통과를 선언하다.

◇명 남 철 임시 의장

- 청원서 상정을 선언하다.
- 산정동 농민회에서 제출분

◇정 응 표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심심한 검토를 한 것이니 내무위원회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분노 청소 사업 대행인 강두선 제출분

◇이 정 권 의원

- 결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처결하자.

◇박 찬 대 사회과장

- 계약서와 대조하여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 참작하겠다.

◇김 창 희 의원

- 법정시간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시간 없이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으로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 문사위에서 계약서와 대조한 결과 미작업일이 20일로써 11일분 6,000환으로 120,000환 정도와 다이야 교체 소요액이 560,000환으로써 그 반액인 280,000환 합계 400,000환을 감하여 주기를 문사위에서 3대 2로 결정하였다. 작업인의 손해도 박대할 뿐 아니라 작년의 예도 있으니 문사위의 결정대로 결의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김 상 태 의원

- 소개의원이다. 계약에 의하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운행할 수 있게끔 한

다 하였으나 다이야 전부 교체로 부담이 크고 애로도 많으니 적극적인 찬성을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의결부에서 조건부로 결의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이 허다하였다. 내무위원회의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다음 페이지는 누락 되었음.